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합3773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사단법인 B

피 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변론 종결 2018. 12. 18.

판결 선고 2019.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4. 28. 접수 제156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2015. 4. 28.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5.4. 28. 접수 제15699호로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의 차남인 D는 2016. 7. 28.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1380호로 원고의 치매상태 등을 이유로 성년후견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3.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및 성년후견인을 사단법인 B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여신거래약정, 근저당권설정계약 등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 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E병원에서 2016. 7. 25. 실시한 원고에 대한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점수는 11/30점, 치매 임상평가 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 측정 결과는 2점이었던 사실, 이에 위 병원의 담당의사는 2016. 8. 25.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라고 진단하였던 사실, 서울가정법원은 2017. 4. 3. 원고가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에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의 인지기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행해진 K-MMSE 검사는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인지기능장애 평가검사이나, 환자의 상태를 간단하게 평가하여 즉각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 있어서도 검사 문항의 답변을 점수화하여 총점을 계산하기 때문에 피검사자가 의도적으로 대답을 거부할 경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교육수준에 따른 변동성도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원고에 대하여 2016. 7. 25. 실시된 K-MMSE 검사에서 11/30점이 기록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은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검사자에 의하여 실시된 검사에서는 13/30점이 기록되었다(갑 제5호증의2 참조).

(2) K-MMSE 검사는 간이검사로 그것만으로는 치매의 중증도 및 정도 여부를 적절히 평가할 수는 없고, 종합심리평가, 뇌자기공명영상을 통한 뇌 위축 등의 확인, 피검사를 통한 이차성 치매 원인 확인 및 PET-CT 검사와 뇌척수액 검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치매의 진행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2016년에 실시된 간이검사 외에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치매의 중증도 및 정도 여부를 평가할 만한 보다 객관적인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대출금액, 대출기간, 근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사건 각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고, 피고의 직원 및 당시 동행하였던 원고의 장남인 F와 사이에 통상적인 수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 무렵인 2015. 4. 30. 작성된 G 병원의 진료기록(갑 제10호증 참조)에는 "기억력이 떨어진다. 날짜 개념은 없으나 시간은 본다. 대화중 돌아서면 잊는다. 이야기를 반복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기억력의 감퇴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원고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5) 이와 관련하여 당시 원고를 간병하고 있던 F는 이 법정에서 "알츠하이머치매나 혈관성 치매, 전두측두엽 치매는 제일 초기에는 한 달에 3~4번 정도만 깜박깜박하시지 대출받은 날도 다음 달이 아버지 제사라면서 달력도 보시고 시계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온전한 판단능력)이 없다는 걸 초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한달에 4번 정도만 깜박깜박하고 그러셨지 정작 심해진 거는 6월달부터 심해진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고은, 판사 김현성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고유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대 130.2㎡

2. 건물

고유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층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지층 92.12㎡

1층 72.12㎡

2층 72.12㎡

3층 72.12㎡

4층 72.12㎡

옥탑 8.88㎡

-이 상-